
2026년 대형폐기물 (폐매트리스) 위탁처리
과 업 지 시 서

2026. 8.

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

re[®]newus

1. 용역명 : 폐매트리스 운반 처리 단가 용역

2.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

가. 적용범위

본 과업내용서는 창원시 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에 반입된 폐매트리스 위탁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나. 과업의 목적

창원시(성상구,의창구)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(폐매트리스)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종합단지내 원활한 운영을하기 위한 용역이다.

3. 과업의 개요

가. 용역금액(기초금액) : 161,000,000원

나. 예정물량 : 7,000장

다. 위 치 :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108번길8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

라. 용역기간 : 착수일로 부터 ~ 2026. 12. 31.

마. 과업범위 : 대형폐기물(폐매트리스) 상차, 운반, 처리

※ 사이즈, 포켓 및 스프링 등 구분 없이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로 반입된 폐매트리스

4. 과업의 내용

가. 본 과업지시서는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으로 반입된 대형폐기물(폐매트리스를)을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리뉴어스주식회사(이하 “발주자” 라 한다)와 계약상대자(이하 “사업자” 라 한다)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나. “사업자”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, 규정,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“발주자”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, 수행한 과업성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다. “사업자”는 용역 착수전 착수계, 과업수행계획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“발주자”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.

라.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

1) “사업자”는 “발주자”의 해당 폐기물 반출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

반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(단, 기상여건으로 인해 운반·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협의 할 수 있다)

- 2)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- 3) 처리대상 폐기물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출할 수 있어야 한다.
- 4)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은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내 설치된 계량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전 또는 화재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발생 시 “발주자”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 ‘
- 5) “사업자”는 “발주자”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- 6)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수집·운반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, 수집운반을 위한 작업시간은 08:30~17:00까지로 제한한다.(협의 변경가능)
- 7) 본 용역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, 분쟁, 사고에 대하여는 “사업자”가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- 8) “사업자”는 “발주자”로부터 위탁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된다.
- 9) “사업자”는 처리한 폐기물의 반입일자, 반입량, 차량번호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마. 폐기물 처리물량 등의 조정

- 1) “발주자”의 계획 변경 등으로 폐기물 위탁처리 물량의 증·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,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.
- 2) “사업자”는 “발주자”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(증·감)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3) “사업자”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다.

바.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

- 1) 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.
 - 청구서 및 증빙서류 등(계근량 등 확인 증명서, 최종 처분 확인 증빙서, 사진대지 등 첨부)
 - 세금계산서

- 기타 발주자가 대행수수료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

사. 보안사항

- 1) “사업자”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“발주자”의 기밀사항 및 기타 “발주자”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2) “사업자”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“발주자”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.

아. 계약해지

“사업자”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“발주자”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“발주자”에게 귀속된다.

- 1) 「폐기물관리법」을 위반하여 문제가 야기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
- 2) “사업자”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“발주자”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3)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- 4) 정당한 사유 없이 “발주자”의 해당 폐기물 반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
5. 안전관리

- 가. 「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“사업자”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산업재해를 근원적 예방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나. “사업자”는 용역 진행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「산업안전보건법」등을 준수하며,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다. 현장에 필요한 소요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 내의 정리,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라. 중요한 공작물이 근접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, 긴급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해 “발주자” 또는 “감독원”과 협의하고 엄수하여야 한다.

6.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 관한 사항

“발주자”와 “사업자”는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“사업자”의 고의 및 과실로 “발주자”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“발주자”는 “사업자”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.

7. 사고책임

- 가. “사업자”는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일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며, 사고발생 즉시 “발주자”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“발주자”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나. “사업자”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며,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책임 이행하여 사고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8. 기타사항

- 가. 과업내용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,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으면 “발주자”의 해석에 따른다.
- 나.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“발주자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